

1. 법률명	일회용품 처리비용을 위한 기금설립법안 [Gesetz zur Schaffung eines Einwegkunststoff-Fonds]
2. 제·개정 일자	2023.03.01.
3. 발의자	연방정부
4. 시행일자	공포한 날부터 시행
5. 소관 상임위	환경, 자연보호, 원자력안전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 (Ausschuss für Umwelt, Naturschutz, nukleare Sicherheit und Verbraucherschutz)
6. 제·개정 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무분별한 사용방지 및 처리비용 감소 - 법의 제정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 순환경제 활성화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함. (특히 플라스틱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함) - 유럽연합 표준원칙 2019/904에 따라 회원국은 일회용품의 생산과 사용 후 처리에 있어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.
7. 주요 내용	<p>가. 생산자의 처리비용 부담 (제8조 제1항~7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회용품의 생산자로 하여금 일회용품 처리비용을 책임지게 하여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제공 감소 <p>나. 일회용품 처리를 위한 기금마련 (제4조 4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회용품 생산자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금조성에 참여하여야 한다. 유럽연합 표준원칙 2019/904에 따라 생산자가 처리비용부담의 의무를 가져야 함. <p>다. 기금마련에 대한 정부지원 (제 5조 1~2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금의 설립과 운용에 대해서는 연방환경청이 담당. 생산자의 기금부담 액수는 일회용품의 종류와 유통량에 따라 산정. - 기금의 규모는 연간 4억 5천만 유로로 평가됨. <p>※ 일회용품으로 규정되는 품목: 테이크 아웃용 종이 및 플라스틱 컵, 쇼핑백, 비닐포장용지, 비닐 봉지, 물티슈, 풍선, 담배필터, 불꽃놀이 용품</p>
8. 자료 출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https://dserver.bundestag.de/btd/20/051/2005164.pdf - https://www.bundesregierung.de/breg-de/suche/einwegkunststoff-fondsgesetz-2139250
보고자: 독일입법관(2023.03.15.)	